
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5. 1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11일 · 정인훈 의원 외 8인 원안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 원안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5. 16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정 인 훈 의원)

가. 제정이유

- 종로구 지역의 출산을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신생아의 부모로 하되,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함.
○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둘째아이는 30만원,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함.
○지원절차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, 동장은 공부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함.
○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함.
○구청장과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대장을 각각 비치 · 관리 하도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-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나 승 혁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안 제4조에서 둘째 아이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장려와 함께 양육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30만원은 다소 부족하여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함.
- 이 조례 운영시 구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로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2007년 10월 1일에서 2008년 1월1일로 조정함.

○ 수정안 본문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50만원을,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.

부칙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정인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중 “3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지원기준)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30만원을,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.	제4조(지원기준) ----- ----- 50만원 ----- ----- ----- -----.
부칙	부칙
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